



제 417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71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I .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제출

나. 제 출 일 : 2024. 7. 24.

다. 회 부 일 : 2024. 7. 25.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개정안 요지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6조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지 아니한기자재를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u>진열·보</u> <u>관</u> 또는 <u>운송</u> 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4의2. ----- ----- ----- ----- <u>운송</u> ----- -----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89조의3(과태료)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3.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제58조의2제2항(적합인증), 제3항(적합등록) 및 제9항(잠정인증)을¹⁾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1)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 통신망에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중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단순히 진열·보관하는 행위와 동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진열·보관 등의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한편, 법무부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단순히 진열·보관만 하는 단계에서는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라는 보호법익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의 경우 실제 판매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만큼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제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28